

별첨2

수습대표 임명절차 및 처리지침

규정내용

지방조직운영규정

제 4 절 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

제19조(구성)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근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(소집)상무집행위원회는 지방본부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

제21조(기능)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지방본부 및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
2. 지부장성대표 또는 수습대표 위촉에 관한 사항
3. 본 규정 제15조의 기능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

단협조항

제15조(시설편의제공)회사는 조합에게조합활동에필요한사무실,집기,비품 및 통신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한다.

제16조(통지의무)회사와조합은 다음각호의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 통지 하여야 한다.

2. 조합의 통지사항
다. 임원의 변동이 있을때

수습대표 및 직무대행 임명절차

1. 중앙지침에 의거 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영업국,망운용국,공석이 된 지부에 수습대표또는 직무대행을 위촉한다.
2. 신설된 영업국,망운용국,공석지부 수습대표 또는 직무대행의 자격은 해당 지방본부 소속의 조합원으로 한정된다. 또한 소속지부를 달리 할 경우에도 가능하다.
3. 수습대표 또는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지방본부는 지체없이 회사측 소속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단협조항에 명시된 일체 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고 점검을 해야한다.
4. 수습대표 및 직무대행의 권한은 선출된 지부장의 역할과 동일하다.